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
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붙임 참고).

○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전년대비)	**2,306,400 (+236,500)**	**2,083,400 (+213,800)**	**1,485,700 (+29,900)**	**1,370,600 (+28,800)**	**1,177,000 (+25,400)**	**657,400 (+13,700)**

3.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
(**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통합재가서비스 :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24. 120개소 → '25. 225개소 목표)
▸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24. 95개소 → '25. 150개소 목표)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 ('24. 5,400명 → '25. 8,100명 목표)

□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 ▸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24. 36유니트 → '25. 54유니트 목표)
> ▸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24. 30개소 → '25. 50개소 목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담당 부서 <보험료율> <수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재형 (044-202-3490)
		담당자	사무관	김준범 (044-202-3499)
		담당자	사무관	진수현 (044-202-3493)
<기관> <인력>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책임자	과 장	임동민 (044-202-3510)
		담당자	사무관	안희정 (044-202-3513)
		담당자	사무관	정순열 (044-202-35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인상률	11.43%	11.44%	2.05%	2.15%	2.21%	2.13%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84,240	16,848	90,450	18,090
2	78,150	15,630	83,910	16,782
3,4,5	73,800	14,760	79,240	15,848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71,010	14,202	72,480	14,496
2	65,890	13,178	67,250	13,450
3,4,5	60,740	12,148	62,000	12,400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	39,810	5,972	40,650	6,098
	2	36,850	5,528	37,630	5,645
	3	34,020	5,103	34,740	5,211
	4	32,470	4,871	33,160	4,974
	5	30,920	4,638	31,580	4,737
	인지지원	30,920	4,638	31,580	4,737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	53,360	8,004	54,490	8,174
	2	49,420	7,413	50,470	7,571
	3	45,620	6,843	46,590	6,989
	4	44,070	6,611	45,000	6,750
	5	42,500	6,375	43,400	6,510
	인지지원	42,500	6,375	43,400	6,51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66,360	9,954	67,770	10,166
	2	61,480	9,222	62,780	9,417
	3	56,760	8,514	57,960	8,694
	4	55,210	8,282	56,380	8,457
	5	53,640	8,046	54,780	8,217
	인지지원	53,640	8,046	54,780	8,217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	73,110	10,967	74,660	11,199
	2	67,720	10,158	69,160	10,374
	3	62,570	9,386	63,900	9,585
	4	61,000	9,150	62,290	9,344
	5	59,450	8,918	60,710	9,107
	인지지원	53,640	8,046	54,780	8,217
13시간 초과	1	78,400	11,760	80,060	12,009
	2	72,630	10,895	74,170	11,126
	3	67,100	10,065	68,520	10,278
	4	65,540	9,831	66,930	10,040
	5	63,990	9,599	65,350	9,803
	인지지원	53,640	8,046	54,780	8,217

④ 단기보호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70,500	10,575	71,970	10,796
2	65,280	9,792	66,640	9,996
3	60,310	9,047	61,560	9,234
4	58,720	8,808	59,940	8,991
5	57,110	8,567	58,300	8,745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86,480	12,97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8,690	7,304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40,760	6,114	41,710	6,257
30분~60분 미만	51,110	7,667	52,310	7,847
60분 이상	61,490	9,224	62,930	9,440